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9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판사가 훼손한 구속요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검사사칭재판'에서 거짓말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사업 200억 원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다수당 대표로 체포동의안이 극적으로 가결되었는데도 기각되었다.

보통은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이유가 간단해 비판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은 다행히 결정사유가 상당히 장황하였다. 피의자의 위상에 따른 예우차원인지, 국민적 관심도나 예상외의 결정에 대한 변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속요건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

먼저 혐의소명에 있어서 위증교사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직접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장단계에서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할 정도라면 피의자가 성남시장으로 최고 책임자였고 실무자들이 상당수 구속까지 된 점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위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본다. 직접증거가 전혀 없어도 유죄가 얼마든지 선고될 수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럼에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로 인해 다시 피의자의 관여가 별로 의심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상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도대체 어디 있나.

다음으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위 혐의들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상당성을 다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고 인적 자료는 확보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인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대북송금의 경우에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한 것은 피의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꼭 단정까지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결정사유에 언급은 없지만 중대한 범죄혐의들이 인정되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도주우려도 충분히 인정되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구속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방어권보장을 끝내 강조하지만 많은 변호인까지 선임한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오히려 재판에만 집중하면 방어권보장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니, 결국 정당 대표이기에 구속하지 않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전 대법원장은 얼마나 억울할까. 또 국민들은 이런 재판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최측근을 껴안고, 재판은 빨리 끝내게 한 후에 국회에는 버젓이 출석하고 선거유세에도 참여하는 모습에 판사는 어쩜 뿌듯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구속요건이 충족된다며 그동안 발부했던 피의자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한 법관이 되기보다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길을 택하므로 재판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깝다.

〈저작권자/법률신문〉